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공중화장실.개방화장실.이동화장실.유료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설을 운영·유지하여야 한다.

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시설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

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”을 “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 시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영실태 및 유지·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·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중화장실 등“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.개방화장실.이동화장실.유료화장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-----.
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① 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설을 운영·유지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시설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	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
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----- ----------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 시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영실태 및 유지·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·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⑤ 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

	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.

관 계 법 령

□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7. 2. 12.] [법률 제21873호, 2026. 8. 11., 일부개정]

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)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(이하 “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,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·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 · 소변기 수의 1.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, 휴식시설,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④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

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

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·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시설 점검 등) 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·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 ·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, 유지 ·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,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: 2027. 2. 12.] 제5조, 제7조, 제12조